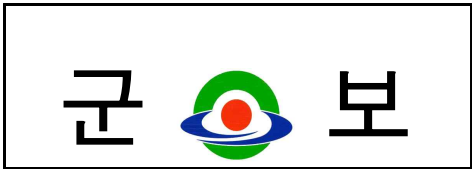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08호 2024. 2. 21.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「예천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4-393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「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

「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1일

예 천 군



1. 조례명 : 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

2. 제정이유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33340호, 2023. 3. 31. 시행)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차령 조정 근거 마련
- 나. 우리 군의 도로여건과 기술적으로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3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조례의 적용대상(안 제3조)

○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

다.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(안 제4조)

○ 택시의 기본차령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함.

4. 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건설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MPSHIN3266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건설교통과

3) 팩스 : 054-650-633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전화: 054-650-625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차령”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.
2. “택시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)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